

WTO 기본통신협상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이글은 정보통신부에서 WTO기본통신협상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문 1. WTO 기본통신협상 타결이 주는 의미는?

WTO 기본통신협상은 금융·해운·통신 WTO 서비스협상 현안 중 최초로 성공적인 타결을 이끌어 냈으므로써 WTO 다자간 무역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과 함께 전세계 기본통신시장('96년기준 약 6000억불 규모)의 90%를 넘는 69개국이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세계 정보통신시장이 본격적인 자유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세계 기본통신시장선점을 위한 국가간의 무한경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WTO 기본통신협상 타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규모가 우리 국내시장 규모보다는 훨씬 크다는 점에서 국내 통신업체들이 기술과 경쟁력을 높일 경우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우리가 경쟁력 향상에 소홀할 경우에는 선진국에게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 2. WTO 기본통신협상에서 양허계획서를 제출한 나라는 얼마나 됩니까?

이번 협상에서 양허계획서를 제출한 나라는 전세계 기본통신서비스 시장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69개 국가이며, 유럽연합(EU) 15개국을 하나로 계산할 경우에는 55개국이 됩니다.

※ 양허계획서 제출국

미국, EU 및 그 회원국(15개국), 일본, 호주, 한국, 캐나다, 홍콩, 멕시코, 슬로바크, 뉴질랜드, 브라질, 싱가폴, 체코, 칠레, 베네수엘라, 스위스, 헝가리, 필리핀, 노르웨이, 이스라엘, 폴란드, 모리셔스, 터키, 도미니카공화국, 파푸아, 뉴기니, 폐루, 태국, 에콰도르, 인도, 파키스탄, 모로코, 코트디부르,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남아공화국,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 자마이카, 루마니아, 가나, 말레이지아, 볼리비아, 그레나다, 안티구아바부다, 트리니다토바고, 튜니지, 세네갈, 도미니카, 벨리즈, 과테말라, 방글라데শ, 브루네이, 스리랑카

문 3.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은 '95년 7월에 발표한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에 들어있는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 원칙이었습니다.

「선 국내경쟁」의 요체는 대외개방에 앞서 조기에 국내 경쟁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작년에 27개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이에따라 작년에 27개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올해에도 시내·외 전화를 비롯하여 TRS, 회선설비 임대등 분야에 신규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여 국내 경쟁체제를 마무리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대비할 것입니다.

「후 국제경쟁」의 요체는 점진적, 단계적 개방을 통해 국내 사업자들이 준비할 기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외국인 지분참여를 '98년에 33%까지 개방하고 2001년에 49%까지 개방한다는 단계적인 개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문 4. 우리나라 WTO 기본통신 양허계획의 주요내용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라나라의 WTO 기본통신 양허계획은 크게 외국인지분제한과 외국인대주주 그리고 음성재판매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지분소유는 '98년부터 유·무선분야 모두 33%, 2001년부터는 49%까지 허용하되 한국통신의 경우 '98년부터 20%, 2001년부터는 33%로 낮춰 허용하며, 동일인 지분제한은 유선분야 10%, 무선분야 33%로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KT는 3%)됩니다.
- 외국인 대주주는 '99년부터 허용(한국통신은 금지)되며, 이 경우에도 동일인 지분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
- 음성재판매서비스는 '99년부터 외국인에게 사업을 허용하되, 외국인 지분소유는 2단계로 나누어 '99년부터 49%, 2001년부터는 100% 허용하며 '98년부터 미리 국내사업자에게 동사업을 허용하여 안정적인 시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양허계획의 특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대외개방으로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자유화의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했다는데 있습니다.

문 5. 협상타결에 따라 현행제도와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외국인 총 지분소유 한도가 현재는 무선통신분야에서만 33%까지 허용되나 '98년부터는 유선전화분야도 33%까지 허용하며 2001년부터는 유·무선 모두 49%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나 현재 유선은 10%, 무선은 33%로 되어 있는 동일인 지분소유 한도는 앞으로도 내·외국인 동등하게 계속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본통신서비스사업자에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현재 금지되고 있으나 '99년부터는 동일인 지분소유 한도내에서 허용됩니다.

또한, 다른 회사로부터 통신회선을 빌려 전화사업을 하는 음성재판매서비스는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98년에 국내 사업자에게 먼저 허용하고 '99년부터는 지분제한 49%범위내에서 외국인의 지분소유가 허용되며, 2001년부터는 100% 외국인 지분소유가 허용됩니다.

문 6. 외국인지분 33% 또는 49% 허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외국인지분을 33% 또는 49%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동일인 지분 소유 한도인 유선 10%, 무선 33% 범위내에서 외국인 전체가 국내 기본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지분 즉, 소유권의 합계가 '98년에 33%까지 허용되고 2001년부터는 이 한도가 49%까지 늘어난다는 것으로 외국인이 단독으로 국내에서 기본통신서비스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 7. 외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양허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이 '98년부터 외국인 지분참여를 100%까지 허용하고 카나다, 싱가폴 같은 국가도 46%~74% 개방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2001년 외국인 지분소유 49%허용은 OECD회원국중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무선분야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20%로 제한하기는 하나, 지주회사를 통해 외국인이 10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우리보다는 양허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개도국의 양허수준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통신발전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나라는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는 낮은 개방 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와 일률적으로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칠레로서 외국인투자를 100% 허용하기로 했고,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태국으로서 외국인투자를 20%까지만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문 8. 동일인 지분제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인 지분제한 제도는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신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크고 전국 각지에 골고루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업은 특정 기업에게 경영권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일인 지분제한은 이러한 이유로 하는 것이며, 현재로서는 폐지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습니다.

문 9. 동일인 지분제한이 유선은 10%인데 무선은 33%입니다. 무선보다 유선이 더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선통신은 한나라 통신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며, 무선통신도 유선팽과의 접속을 통해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무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아직 유선을 대체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은 무선망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역시 유선망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선통신사업보다 유선통신사업의 동일인 지분제한이 더 강한 것은 무선분야보다 공익성이 더 크고 중요한 유선분야에서의 경제력 집중을 더 강하게 방지하여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 10. 외국의 통신사업자들이 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외국기업이 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유선에 비해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적게드는 음성재판매와 개인휴대통신(PCS) 등의 무선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 역시, 우선 국내 경쟁기반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외국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음성재판매서비스의 경우, 내년에 국내사업자에게 먼저 허용하여 경쟁력을 키운다음, '99년부터 1단계로 외국인이 49%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2001년에 가서야 2단계로 외국인이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PCS 등 무선통신분야의 경우에도, 이미 지난해 허가된 신규사업자들이 시장개방전에 경쟁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CDMA 기술을 세계최초로 상용화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외국사업자들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문 11. 기본통신협상 타결이 국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WTO기본통신협상의 타결에 따라 내년부터는 AT&T처럼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외국의 유수통신사업자들이 새로운 합작투자회사 설립과 국내사업자와의 전략적인 제휴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첨단 서비스분야에선 외국사업자들에게 국내시장이 일부 잠식 될 수도 있으며 향후 국내시장은 국내사업자들간의 경쟁은 물론 외국사업자들과도 서비스질과 이용요금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국내외 사업자간의 경쟁으로 국민들은 더욱 품질좋고 값싼 통신서비스를 다양하게 골라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통신비용 부담이 줄게되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되 제공자가 외국인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통신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제 통신산업은 기술과 가격 경쟁력만 우수하면 세계를 무대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것입니다.

문 12. 이번 협상타결로 우리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좋아지는지요?

이번 협상에서 전세계 기본통신시장규모의 90%를 넘는 국가들이 '98년부터 통신시장의 개방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이러한 각국의 자유화계획을 잘 활용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전략을 수립할 경우 우리 기업들도 해외시장을 상당부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본통신협상의 타결로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동남아 시장이 대폭 개방될 계획으로 있어 국내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우리기업이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남미시장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가 약 50%~100%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므로 우리 기업의 시장진입 여지가 대폭 확대됩니다. 그리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100%로 시장을 개방할 계획으로 있어 국내기업의 현지진출에 대한 장벽이 전면 철폐됩니다. (주요국 양허내용 참고)

문 13. 세계유수의 외국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될 국내 통신업체의 경쟁력은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정부는 그동안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통신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 원칙에 의한 경쟁 확대 정책을 확실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업체의 경쟁력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교환기 생산국이며 첨단 이동통신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기술을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나라입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핵심기술인 ATM교환기도 이미 생산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외국업체와도 충분히 경쟁해 볼만한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AT&T, BT등 외국의 유수 통신사업자들이 앞선 기술과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합작투자 및 국내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입할 경우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선 일부 시장이 잠식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향상 노력이 계속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WTO 기본통신협상 타결, 정보기술 협정(ITA) 출범등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긴안목으로 볼 때는 결국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보다 질 좋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 통신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기술개발을 토대로 신규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계속 향상시키면서 요금은 낮추어 가도록 유도하겠으며,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제도정비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 14. 협상타결에 따른 정부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전기통신기본법과 사업법 등 정보통신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WTO 협상결과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지분제한, 사업자 분류체계 등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손질하여 올 상반기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하게 하반기 중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긴 안목으로 볼 때는 결국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보다 질좋고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 통신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내 통신사업자들이 기술개발을 토대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계속 향상시키면서 요금은 낮추어 가도록 유도할 것이며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제도정비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기조하에 정부는 요금규제를 '인가원칙-신고예외'에서 '신고원칙-인가예외'로 전환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난 해에 27개 신규통신사업자를 허가한데 이어 금년에도 시내전화, 시외전화, 지역TRS 등의 분야에서 신규통신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하여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 경쟁체제를 마무리함은 물론 위성휴대통

신, 음성재판매사업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을 조기에 정립하여 국내사업자에 먼저 허가하여 줄 것입니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종서비스간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출자기관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정부소유주식의 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통신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체간 전략적인 제휴와 공동진출을 추진하고 정부차원의 대외협력, 진출지원대책을 강화하며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과 보험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용어해설〉

재판매서비스

재판매서비스란 설비를 보유한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설비 및 통신서비스를 임차해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통신서비스이다.

재판매서비스는 회선재판매(Line Resale)와 서비스재판매(Service Resale)로 구분된다. 회선재판매는 전용회선을 설비보유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회선 자체를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회선재판매는 주로 고속회선을 임차해 다중화장치를 이용해 저속 회선으로 분할하여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서비스재판매는 교환설비보유 재판매사업자(Switched Reseller)와 교환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자(Switchless Reseller)로 구분된다. 교환설비보유 재판매사업은 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임차한 다음 자신의 교환기를 이용하여 시외·국제회선과 같은 장거리 전화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임차한 통신회선과 공중전화망과의 접속이 허용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교환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자는 설비보유 사업자의 대량이용 할인제도에 기초한 중개업무를 사업기반으로 한다. 이에는 재과금사업자(Rebiller), 호집중사업자(Aggregator) 및 다단계판매사업자가 있다. 재과금사업자는 장거리전화사업자로부터 과금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재과금하는 사업자로 과금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고, 호집중사업자는 넓은 지역에 산재한 고객들을 장거리전화사업자의 할인요금의 대상이 되는 단일 고객으로 모으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다단계판매업자는 전화카드등 각종 통신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공.전.공 접속

공. 전. 공 접속이란 전용회선의 양쪽 끝을 공중전화망과 연결하는 것이다. 즉 공중전화망-전용회선-공중전화망으로 연결되는 상호접속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공. 전. 공 접속은 음성재판매사업의 전제조건으로서, 공. 전. 공 접속이 허용되지 않으면 재판매방식에 의한 전화사업은 성립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공. 전. 공 접속이 허용되나, 음성을 전송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동일 통화권내가 아니면 공. 전. 공 접속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MFN 대우

MFN(Most Favored Nation : 최혜국) 대우란 WTO 회원국인 어떤 국가가 특정 외국에 부여한 혜택은 다른 모든 국가에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WTO 다자간 무역체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며 상호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